

4

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

□ 과세표준 [지법 § 103조의41] 법인세 규정 준용

-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
- 단,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

□ 세율 [지법 § 103조의42] 법인세 규정 준용

-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지방소득세율 적용(1%~2.2%)

□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

$$\text{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} = \text{과세표준} * \text{세율}$$

□ 안분

- 사업연도 종료일(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)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

□ 확정신고 · 납부 [지법 § 103조의43]

- 법법 §84조에 따른 확정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
- 해당 신고기한까지 (※ 법인세 신고·납부기한과 동일)
 - 해산한 경우 :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 -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: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·납부

□ 제출서류 및 납부 서식

-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[별지 제45호 서식]
- 납부서[별지 제14호 서식 또는 제43호의 8서식]

[2015 청산소득 중간신고 의무 개정 안]

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중간신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중간신고 의무 규정 추가

<Check>

- ▶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
- ▶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
- ▶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·증가산금 미징수
- ▶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미과세(지법§103조의46)